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45 발의연월일: 2023. 3. 17.

발 의 자: 강훈식 · 김교흥 · 김윤덕

신정훈 • 이학영 • 장철민

김민석 • 우원식 • 이소영

장경태·정필모·허 영

조오섭ㆍ최기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무총리훈령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관계 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약류대책협의회 가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한편, 마약류의 높은 의존성·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경우재범률이 높고, 치료·재활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 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 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제2조의5 및 제40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마약류를 적 정하게 취급·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 의 협의·조정을 거쳐 5년마다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마약류관 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 3. 마약류관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력사항
- 4. 그 밖에 마약류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2조의5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약류관리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5(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 및 오남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한다.
 - 1.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 정보의 공유, 국제협력·수사·감독·단속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 3. 마약류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 4. 그 밖에 마약류 관련 기관과의 협의 · 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복수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교육부차관
- 3. 외교부차관
- 4. 법무부차관
- 5. 행정안전부차관
- 6. 보건복지부차관
- 7.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 8. 국가정보원차장
- 9. 식품의약품안전차장
- 10. 대검찰청차장검사
- 11. 관세청차장
- 12. 경찰청차장
- 13. 해양경찰청차장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 ⑥ 위촉 위원은 학계·언론계·기관·단체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⑦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⑧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⑨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 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이라 한다)
 -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4. 사회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자료(「개인 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같은 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수집 및 이용
 - 5.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활용과 사회재활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2조의4(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
| |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마약 |
| | 류를 적정하게 취급・관리하기 |
| |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마약 |
| | 류대책협의회의 협의 · 조정을 |
| | 거쳐 5년마다 마약류관리기본 |
| | 계획(이하 "마약류관리기본계 |
| | 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 |
| | <u> 여야 한다.</u> |
| | ② 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는 다 |
| |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
| | <u>한다.</u> |
| | 1.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
| | 와 추진방향 |
|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
| | 과 추진방법 |
| | 3. 마약류관리 관계 기관 및 단 |
| | 체의 역할과 협력사항 |
| | 4. 그 밖에 마약류관리를 체계 |
| | 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 |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 | 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

<신 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제2조의5에 따른 마약류 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 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 관계 기관·단체등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약류관리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마약류관리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협의 · 조정한다.

- 1.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 정보의 공유, 국제협 력・수사・감독・단속 및 교 육・홍보 등을 위한 관련 기 관과의 협의사항
- 3. 마약류중독 치료 및 재활 관 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 4. 그 밖에 마약류 관련 기관과 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 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복수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 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교육부차관
- 3. 외교부차관
- 4. 법무부차관

- 5. 행정안전부차관
- 6. 보건복지부차관
- 7.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 8. 국가정보원차장
- 9. 식품의약품안전차장
- 10. 대검찰청차장검사
- 11. 관세청차장
- 12. 경찰청차장
- 13. 해양경찰청차장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원
- ⑥ 위촉 위원은 학계·언론계·기관·단체 등 마약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①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 위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 는 자가 된다.
- ⑧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⑨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

<신 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이하 "사 회재활사업"이라 한다)
 -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양성 및 활용
 - 4. 사회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정보는 같은 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수집 및 이용

5.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양성・활용과 사회재활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